

**부록 E: 행정 청문회 판결**

장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문행정처

OAH 제 2015000000 호

교육 상담 서비스 이용 제한 면제 건

당사자: **SALLY X**

(원고)

및

지역 센터,

서비스 기관.

판결문

미 캘리포니아주 청문행정처 소속의 **Mary Smith** 행정법 판사는 2011년 9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본 건을 심리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인 **Bill X**는 공정한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원고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Ryan M** 씨는 해당 지역 센터(**RC**) 서비스 기관의 대표였습니다.

구두 및 문서상의 증거 자료를 접수했으며 본 건은 2011년 9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쟁점

1. 원고의 교육 상담사에게 재정을 지원할 권한을 서비스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 4648 의 5 조에 의거해 서비스 이용 제한 면제 요건이 존재하는가?

## 사실 확인

### *사법권상의 문제*

1. 2011년 7월 5일, RC는 원고 측 교육 상담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하는 내용의 조처안 통지서를 원고 측에 전달했습니다. 2011년 7월 25일, RC는 R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 측의 공정한 청문 요청을 접수했으며 본 이의 제기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의 서비스 이용 자격과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2. 원고는 중증 뇌성마비 및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14세의 여성입니다. 이전의 행정 청문에 따른 결과로서 공표된 2010년 1월 7일 법원 명령에 따라 RC는 현재 Sally의 개인 프로그램 계획(IEP)에서 도움을 제공하고자 매월 16시간의 교육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랜터만법과 지역 센터*

3. 랜터만 발달장애인서비스법(약칭 '랜터만법')의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500 조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캘리포니아주 발달서비스부(DDS)는 랜터만법에 의거해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의 보호, 양육 및 치료와 관련된 법률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산하의 담당 공공기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4416 조) 법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DDS는 "평생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적합한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발달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이른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s, RC**)"로 알려진 사설 비영리 커뮤니티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4620 조)

5. 수요자들에 대한 지역 센터의 책임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4640 조~제 4659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9 년 랜터만법 수정안(2009 Amendments to the Lanterman Act)*

6.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전례없는 예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DDS** 를 포함한 주 정부의 모든 영역은 이러한 재정 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에서 기존 랜터만법을 수정한 내용의 의안 **9(AB 9)**가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에 추가된 제 **4648** 의 5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2009 년 7 월 1 일 발효된 정반대의 법률 또는 규정을 이루는 여타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할 지역 센터의 권한은 개별선택예산(**Individual Choice Budget**)을 집행하기 전에 보류해야 하며, 이미 집행한 개별선택예산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비용을 차감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주 정부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발달서비스부(**DDS**) 장관이 증명하기 전에 보류해야 한다.

(1) 캠핑 서비스 및 관련 여행 경비.

(2) 사회성 레크리에이션 활동(커뮤니티 기반의 데이 프로그램으로 판매되는 활동은 제외).

(3) 3 세 – 17 세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4) 특수 레크리에이션, 예술, 댄스, 음악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 비의료적 치료.

(b) 개인 프로그램 계획(IPP) 또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의 일환에서 상기의 (a)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센터 수요자들의 경우, 상기 (a)항의 금지 요건은 2009년 8월 1일에 발효한다.

(c) 해당 서비스가 수요자의 발달 장애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사회적 영향들을 개선하기 위한 1 차적 수단 내지 주요 수단에 속할 경우 혹은 수요자의 가정에서 수요자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가 꼭 필요하며 수요자의 제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적인 서비스가 없다고 지역 센터에 판단할 경우에는 상기 (a)항에서 확인된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허용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면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조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정의하지 않았으며, 수요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례별로 이러한 결정을 각 지역 센터와 사실심리관에게 맡기기 위해 수요자의 발달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1 차적 수단 내지 주요 수단"을 의미하는 것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청문회에 제출된 증거*

7. RC 프로그램 관리 담당자인 Warren W 는 원고(Sally)가 최근 다른 중학교에 출석하기 시작했으며 원고가 제기한 문제들은 이전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원고의 현재 교육 상담사인 Deborah P 가 RC 서비스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과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RC 측이 Deborah 의 서비스를 활용할 의사가 더 이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Deborah 가 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 재정을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8. 원고 측 부모는 원고의 교육구를 상대로 벌였던 서비스 분쟁에 대해 믿을 수 있으면서도 설득력 있게 증언했으며, IEP 에 요약된 바와 같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해당 교육구가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담사인 **Deborah P** 가 원고(**Sally**)의 제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다 원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원고의 **IEP**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현재 새로운 학교에 출석하고는 있지만 **IEP** 에 요약된 모든 필수 서비스를 아직까지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해당 교육구는 현재 원고의 언어 서비스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는 절차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니다.

### *평가*

9. 원고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4648 의 5 조 (c)항에 따른 면제 요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증거의 우위를 근거로 하여 입증되었습니다. 교육 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원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니다. 어떤 사유든 간에 원고 측의 교육구는 원고의 교육에 있어 다루기 힘든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이며, 오로지 **Deborah P** 의 행동을 통해서만 협조했던 것입니니다. 이제 **Deborah** 의 교육 상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원고와 그 가족에게 매우 불리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니다. **RC** 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 면제 요건을 규정하는 이 법원의 이전 명령을 번복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기 위해 제반 상황의 충분한 변화를 규명하지 않았습니니다. 경과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과실과 관련해 **RC** 와 **Deborah P** 간의 모든 문제는 내부 서비스 제공자 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경과 보고서가 접수될 때까지 **Deborah P** 의 청구 비용 변제를 **RC** 에서 보류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건에서 원고를 배제함으로써 원고를 징계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니다.

### 법적 결론

#### *입증 책임*

1. 통상적인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 소송에서는 적극적 항변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대체로 증거의 우위에 따른 설득 책임을 포함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McCoy v. Board of Retirement(1986)** 183 Cal.App.3d

1044, 1051-1052.) RC 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 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규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랜터만 법(Lanterman Act)*

2. 주 의회는 연령이나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각 생애 단계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각 개인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히 완성된 형태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른바 '랜터만 발달장애인서비스법'으로 알려진 종합적인 법제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제의 목적은 크게 2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와 이들 장애인이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예방 내지는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발달장애인들이 동일한 연령대의 비장애인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보다 독립적이면서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지체자 시민 연맹) 대 캘리포니아주 발달서비스부(1985) 간 소송, 38 Cal.3d 384, 388.) 원고 측이 요청한 서비스 중에서 원고의 건강 상태와 대비해 부당하거나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만한 서비스는 전혀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당수 서비스들은 IEP 에 근거하여 제공해야 했으며, 교육구 측은 여전히 불명확한 내용의 제반 사유에 근거해 그러한 서비스를 이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3. 랜터만 발달장애인서비스법의 관련 조항들은 사실 확인(Factual Findings)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육 상담 서비스 이용 제한 면제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사유가*

*존재*

4. RC 가 원고를 위한 교육 상담 서비스의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은 증거의 우위를 근거로 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계속해서 제출했습니다.

명령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4648 의 5 조 (c)항에 따른 원고 측의 서비스 이용 제한 면제 요청을 인정합니다. RC 는 원고 측의 교육 상담 서비스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날짜: 2011 년 9 월 23 일 금요일

MARY SMITH

행정법 판사

청문 행정처

#### 참고 사항

본 판결은 최종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소송 당사자 양측은 본 판결의 구속력을 받습니다. 각 당사자는 90 일 이내에 적법한 관할법원에서 본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을 참조하십시오.